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근거 마련〉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74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근거 마련 ..... | 2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허성무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11.
3. 회부연월일 : 2025. 4. 1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불,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결손 보전이나 시설복구비 지원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중소기업에는 융자, 상환 유예 등 간접적 금융지원에 국한되고 있으며, 공장 전소 등으로 인한 장기간 영업 중단과 매출 손실 등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천재지변 또는 대형 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영업결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 1.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근거 마련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영업 결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9조의2제1항 신설), 천재지변, 화재, 산불, 홍수, 지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영업 결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제29조의2(재해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영업결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천재지변, 화재, 산불, 홍수, 지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영업</p> |

| 현행 | 개정안                                                                          |
|----|------------------------------------------------------------------------------|
|    | <u>결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u><br><u>③ 제2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하게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대해 규정한 현행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응·대비·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같은 법 제61조<sup>1)</sup>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같은 법 제66조제3항<sup>2)</sup>의 개정<sup>3)</sup>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 5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3) 법률 제2096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2025.5.27. 공포, 2025.11.28. 시행 예정). 다만, 개정법률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 등의 개정규정은 2025.3.21.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재난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표 1] 2025년 5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

| 기존                                                                                                                                                                                                                        | 개정                                                                                                                                                                                                                                              |
|---------------------------------------------------------------------------------------------------------------------------------------------------------------------------------------------------------------------------|-------------------------------------------------------------------------------------------------------------------------------------------------------------------------------------------------------------------------------------------------|
|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br><br>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생략)<br><br>1. ~ 5. (생략)<br><br>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u>소상공인에 대한 지원</u><br><br><u>&lt;신 설&gt;</u> |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br><br>③ -----<br>-----<br>-----<br>-----<br><br>1. ~ 5. (현행과 같음)<br><br>5의2. -----<br>----- <u>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u><br><br>5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
| 부 칙<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한다.                                                                                           |                                                                                                                                                                                                                                                 |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지원사항에 더하여,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조치와 영업결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5호의3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과 그 대상·내용·범위 측면에서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데,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별도의 범위 규정 없이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안 제1항),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안 제2항)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표 2] 개정안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비교

| 구분                  | 개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 지원 대상<br>중소기업<br>정의 | - 조문에 별도 정의 부재<br>※ 같은 법 제2조(정의)는 “지역 중소기업”을 정의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지원 내용               | - 시설 복구비 지원<br>- 영업 결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세제 지원                                                     | - 시설 복구비 지원<br>-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
| 지원 범위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재난”(안 제1항)<br>- 영업 결손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안 제2항)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재난” |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 없이, 제2조4)에서 “지역중소기업”만을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 피해시설 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므로, 개정안에 따른 재난 피해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등을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 제29조의2제1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 특례와 지방세 특례는 각각 「조세특례제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지역혁신 선도기업”이란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지역중소기업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이를 통한 해당 지역의 활력 회복 등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과 관계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다.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

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3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한법」 5)과 「지방세특례제한법」 6)에 따라 실질적인 감면·면제가 이루어지는바, 개별 법률에서 조세특례 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직접 조세 감면·면제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sup>7)</sup>. 또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8)에서 국가와 지

5)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 25. (생략)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실제 여러 법률에서 조세 감면·면제의 근거 규정이 규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세 감면·면제를 위해서는 개별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야 함.

- 예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조세의 감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6조(조세 감면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2조(조세의 감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세제혜택) 등 다수의 법률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 5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 등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 제29조의2제2항은 천재지변, 화재, 산불, 홍수, 지진 등에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영업결손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어서 제3항은 보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2항은 법 문언상 “보상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이와 관련된 비용 부담, 지원사무의 주체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안 제2항은 기존의 입법례<sup>9)</sup>를 참고하여 보상의 주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손실보상) ① **국방부장관**은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조사·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굴토(掘土)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굴토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넷째, 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3항은 중소기업의 영업결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보상’이라는 용어는 적법한 국가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행해지는 보전(補填) 행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인 경우로 주로 정의되고 있음<sup>10)11)</sup>.

따라서, 재난에 따른 영업결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영업결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전자금, 시설복구비, 세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sup>12)</sup>이 우리 위원회에 계

---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4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4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11) <비교 입법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1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01호, 정회용의원 대표발의)

류중으로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고,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규제자유특구사업자 등에 대한 복구비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sup>13)</sup> 및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복구비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sup>14)</sup>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인 점,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건의 법률 제정안<sup>15)</sup>이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미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어 법률 개정의 실익이

---

13) 의안번호 2210421호(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452호(정희용의원 대표발의)

14) 의안번호 2210419호(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453호(정희용의원 대표발의)

15)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615호,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855호,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957호,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998호,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670호, 이달희의원 대표발의)

크지 않다는 입장임. 또한, 현행 법체계상 영업결손 등 보상은 국가의 행정조치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시행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개정안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로 발생한 것이 아닌 재난 등으로 인한 영업결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임.

|               |
|---------------|
| 문 의 처         |
| 02) 6788-5467 |